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총무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
2	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3
3	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-----	5
4	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-----	7
5	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-----	9
6	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1
7	거창군립한미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3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0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08. 2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9. 12

2. 개정이유

- 직업의 다양화에 따른 주말부부 등이 증가하면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부모 모두 관내에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부 또는 모가 관내에 거주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
-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되는 금액대비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과다 지원으로 야기되는 위화감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출산장려금, 영유아양육비,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완화
(안 제3조, 제6조, 제11조, 제16조)
 - 부모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 ⇒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
- 나.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범위 설정(안 제17조)
 - 학자금 전액 ⇒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
- 다. 「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(안 제20조)
 - 창조정책과 ⇒ 창조산업과, 교육문화센터 ⇒ 문화센터
- 라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
 - 자 ⇒ 사람, 타 ⇒ 다른, 당해 ⇒ 해당

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부모 모두가 관내에 거주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,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되는 금액대비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과다 지원으로 야기되는 위화감 또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지원조건 완화 및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을 감안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,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0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08. 2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9. 12

2. 개정이유

-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 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정부 규제개선 대책관련 자치법규 개선과제 반영
 - 통합브랜드 사용 신청서 제출 기한 폐지(안 제4조제2항)
 - 통합브랜드사용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
: 6종 ⇒ 4종(안 별지 제1호 서식)
 - 품질준수 각서(별지 제2호 서식) 삭제

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서,

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0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08. 2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9. 12

2. 폐지이유

- 경남도립거창대학 내 2013. 1. 1일자 조직개편으로 「거창 미래전략연구소」가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른 본 조례 폐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조직개편으로 「거창 미래전략연구소」가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조례 폐지가 적합·타당하고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0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08. 2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9. 12

2. 제정이유

-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근거 및 제정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- 나.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5조)
- 다.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용에 관하여 정함(안 제6조)
- 라.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(안 제7조)
- 마. 「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(안 부칙) - 통합브랜드 사용 신청서 제출 기한 폐지(안 제4조제2항)
 - 통합브랜드사용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: 6종 ⇒ 4종(안 별지 제1호 서식)
 - 품질준수 각서(별지 제2호 서식) 삭제

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
- 본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〔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 〕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0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08. 2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9. 12

2. 제정이유

- 「교육기본법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근거한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우리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교육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상(안 제3조)
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책무(안 제5조)
- 다. 공동추진(안 제6조)
- 라. 공공시설의 이용(안 제8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우리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서
- 본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0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08. 2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9. 12

2. 개정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시행령 개정사항과 「공유재산 운영기준」 변경사항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공유재산 대부료율과 각종 이자율을 인하하여 규제완화 및 대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(안 제6조)
- 나. 「공유재산법」 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부(사용)료율 변경 및 신설(안 제24조)
- 다. 매각대금, 변상금 분납이자율 및 과오납 반환이자 인하 및 신설 (안 제35조·제81조·제81조의2)

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「공유재산 운영기준」 변경사항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공유재산 대부료율과 각종 이자율을 인하하여 규제완화 및 대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서,

- 본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0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08. 2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9. 12

2. 개정이유

-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·완화하여 독서진흥 발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도서대출 이용자 확대(안 제6조)
- 나. 도서관 이용자가 할 수 없는 사항 중 규제해당 내용 삭제(안 제10조제2항제3호)
- 다.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시간 연장함(안 제11조)
- 라. 도서관 이용하거의 취소 및 정지 사항 중 규제해당 내용 변경(안 제13조제2항제호)
- 마. 입관 제한 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 삭제(제15조)

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·완화하여 독서진흥발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본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